#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61

발의연월일: 2023. 3. 15

발 의 자 : 윤영석 · 서일준 · 조명희

박덕흠 • 강기윤 • 박대수

박대출 · 김태호 · 박형수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 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 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성격으로 당시에는 백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화합물의약 산업의 육성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반 기술이 된다는 점과 2021년 기준 2,60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바이오·화합물의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하고자 함. 또한,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함. 이는 반도체 생태계가 소수 기업 성과에 의해 국가 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국가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품 공급망의 주요 업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며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이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그리고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제24조제1항제2호가목).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이하"를 "기술(디스플레이, 백신, 바이오·화합물의약, 반도체, 배터리, 차세대 원자력 산업 분야의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8"을 "15"로, "중소기업은"을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으로, "16"을 "2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 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u>,</u>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2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술</u>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답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디스플레이, 백신, 바이오ㆍ					
화합물의약, 반도체, 배터리,					
차세대 원자력 산업 분야의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5. (원왕과 실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11/24/24(6 日   / 1/ / 11   1   0 / / 11 / 12   1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1. (현행과 같음)
2
가
,
1) (현행과 같음)
2)
<u>15</u> -
<u>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u> 소기어의 25
<u>소기업은25</u>

나. (생 략)나. (현행과 같음)② ~ ⑤ (생 략)② ~ ⑤ (현행과 같음)